

감 사 위 원 회 규 정

2009.04.01. 제정

2010.04.21. 개정

2019.01.29. 개정

2021.07.01. 개정

2026.04.30. 개정

주식회사 엘엑스하우시스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감사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감사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직무와 권한)

- ① 감사위원회는 이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하며, 이를 위하여 언제든지 이사에 대하여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 ② 감사위원회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감사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 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 ④ 감사위원회는 법령 및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의결한다.

제 2 장 구 성

제4조 (구성)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며, 위원 3분의 2이상은 독립이사로 구성한다. [2026.04.30. 본조 개정]

제5조 (임기)

- ① 감사위원회 위원 3분의 2이상의 임기는 법령, 정관에 정해진 사항이 없을 경우 당해 위원의 이사 임기 만료시점까지로 한다.
- ② 감사위원회 위원은 연임될 수 있다.

제6조 (위원장)

- ① 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하는 위원장을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인의 위원이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 있다.
- ② 위원장의 궐위 또는 유고로 인해 그 직무를 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감사위원회에서 정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3 장 회 의

제7조 (소집)

감사위원회는 분기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

제8조 (소집권자)

- ① 감사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그러나 위원장 유고로 인하여 직무를 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6조 제2항에 정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② 각 위원은 위원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히어 감사위원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위원장이 정당한 사유없이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 위원회의 소집을 요구한 위원이 감사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9조 (소집절차)

- ① 감사위원회 소집은 회일을 정하여 적어도 12시간 전에 각 감사위원에 대하여 서면, 전자문서 또는 구두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 ② 감사위원회는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제1항의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열 수 있다.

제10조 (의사의 진행 및 결의방법)

- ① 감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사를 진행하고, 회의의 질서를 유지한다.
- ② 감사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로 한다.
통신수단에 의한 결의에 관하여는 이사회 규정 제12조 제4항을 준용한다.
- ③ 감사위원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사할 수 없는 의결권의 수는 출석한 위원의 의결권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⑤ 상법 제393조의2의 제4항에 따라 감사위원회는 결의된 사항을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 (부의사항)

① 감사위원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이사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가. 감사보고서의 작성, 제출

나. 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유지청구

다. 이사에 대한 영업보고 요구

라. 이사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2. 감사에 관한 사항

가. 상법 제 412조의 2 소정의 이사의 보고에 따른 조치

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대한 법률(이하 '외부감사법'이라 한다) 제22조

소정의 외부감사인(이하 '감사인'이라 한다)의 통보에 따른 조치

[2019.01.29.본목 개정]

다. 감사록의 작성

라. 자회사의 조사에 관한 사항

마. 전문가의 조력에 관한 사항

바. 업무·재산 조사

사. 이사와 회사간의 소에 관한 대표

아. 소수주주의 이사에 대한 제소 요청시 소제기 결정 여부

자. 회사 재무제표의 검토

차. 중요한 회계처리기준 또는 회계 추정의 변경시 적정성 및 타당성 검토

카.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 평가

타. 내부감시장치의 가동현황에 대한 평가

파. 내부회계관리규정의 제정 또는 변경 [2019.01.29.본목 신설]

3. 다른 감사부문에 관한 사항

가. 감사인 선정을 위한 검토 [2019.01.29.본목 신설]

나. 감사인의 선정 및 변경·해임 요청 [2019.01.29.본목 개정]

4.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가. 감사보고서의 작성·제출 및 주주총회에서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

나.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청구

5. 기타 법령에 정하거나 정관 및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 및 이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6. 기타 대표이사가 감사위원회에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중요사항

② 이사회에 보고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이사회에서 감사위원회에 위임한 사항의 처리결과

2.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는

경우 이에 관한 사항

제11조의2 (내부회계관리제도)

- ① 대표이사는 매 사업연도마다 감사위원회에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용실태를 보고 하여야 한다. 다만,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사유를 문서로 제출하면서 내부회계관리자가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 ② 감사위원회는 매 사업연도마다 대면 회의를 통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용실태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정기 총회 개최 1주 전까지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019.01.29.본조 신설]

제12조 (관계인의 출석)

감사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임직원 및 감사인을 회의에 참석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 (의사록)

- ① 감사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
-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 ③ 의사록의 사본을 회의 후 7일 이내에 각 이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4장 감사인의 선임 등

제14조 (감사인의 선임)

- ① 회사는 감사위원회가 선정한 회계법인을 사업연도 개시일 이전에 회사의 감사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위원회는 대면 회의를 개최하여, 별도로 정한 '감사인 후보 평가 기준 및 절차'에 따라 감사인을 선정한다.

[2019.01.29. 본항 개정]

- ② 감사인을 선임하는 때에는 연속하는 매 3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동일 감사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 ③ 감사위원회는 감사인의 감사보수와 감사시간, 감사에 필요한 인력에 관한 사항을 문서로 정하여야 한다. [2019.01.29.본항 개정]

제14조의2 (감사인 평가)

감사위원회는 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제출 받은 경우 제14조 제3항에 따라 문서로 정한 '감사인의 감사보수와 감사시간, 감사에 필요한 인력에 관한 사항'이

준수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2019.01.29.본조 신설]

제15조 (감사인의 변경)

회사는 선임된 감사인이 사업연도 중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감사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새로운 감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1. 감사인이 파산 등의 사유로 해산하는 경우(합병으로 인한 해산의 경우는 제외함)
2. 감사인인 회계법인이 「공인회계사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되거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지된 경우
3. 감사인이 외부감사법 제9조의2 제5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
4. 감사인이 외부감사법 제29조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조치로 해당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는 경우
5. 그 밖에 감사인이 해당 사업연도의 회계감사를 수행할 수 없다고 증권선물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2019.01.29.본조 개정]

제16조 (감사인의 해임)

- ① 회사는 감사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 중이라도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감사위원회가 해임 요청한 감사인을 해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사는 감사인을 해임한 후 2개월 이내에 새로운 감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2019.01.29.본항 개정]

1. 감사인이 회사의 기밀을 누설하는 등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감사인이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회사에 대하여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3. 감사인이 회계감사와 관련하여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압력을 행사한 경우
4. 외국투자가가 출자한 회사로서 그 출자조건에서 감사인을 한정하고 있는 경우 [2019.01.29.본호 개정]
5. 지배회사 또는 종속회사가 그 지배·종속의 관계에 있는 회사와 같은 지정감사인을 선임하여야 하는 경우 [2019.01.29.본호 개정]

-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감사인을 해임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증권선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의2 (감사계약의 해지)

- ① 감사인이 「공인회계사법」 제21조 또는 제33조를 위반한 경우 회사는 지체없이 감사인과의 감사계약을 해지하여야 하며, 감사계약을 해지한 후

2개월 이내에 새로운 감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 ② 감사인은 외부감사법 제16조에 따른 회계감사기준에서 정하는 독립성이 훼손된 경우 등 외부감사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연도 중이라도 감사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③ 감사인은 감사의견과 관련하여 부당한 요구나 압력을 받은 경우 등 외부감사법 시행령 제21조 제3항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 중이라도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남은 사업연도에 대한 감사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④ 감사인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감사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019.01.29.본조 신설]

제17조 (전기감사인의 의견진술권)

- ① 회사는 직전사업연도에 당해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를 행한 감사인(“이하 전기감사 인”이라 한다) 외의 다른 감사인을 감사인으로 선임하거나 제16조에 의하여 전기감사인을 해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기감사인에게 위원회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② 회사는 전항의 경우 전기감사인에게 새로운 감사인과의 감사계약 체결

2주전 까지 문서 또는 구술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는 사실을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③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임되는 감사인이 의견을 진술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전기감사인을 해임한 사유
2. 전기감사인이 진술한 의견
3. 감사위원회 위원 전원이 제1호 및 제2호의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한 사실

[2019.01.29.본조 개정]

제18조 (독립성 확보)

감사위원회는 감사인과 회사와의 관계에 관련된 주요사항을 비롯하여 외부감사의
독립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고, 외부감사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적절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제18조의2 (부정행위 등의 보고)

- ① 감사위원회는 감사인으로부터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통보 받은
경우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전문가를 선임하여 위반사실 등을 조사하도록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대표이사에게 시정 등을 요구하여야 한다.

- ② 감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및 회사의 시정조치 결과 등을 즉시 증권선물위원회와 감사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감사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직무를 수행할 때 대표이사에 대해 필요한 자료나 정보 및 비용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표이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④ 감사위원회는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대한 사실을 발견하면 감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019.01.29.본조 신설]

제19조 (의견교환)

감사위원회는 감사인과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며 감사인과 회사의 내부통제제도 및 회사 재무제표의 정확성 등에 관하여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제20조 (전문가의 조력)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구할 수 있다.

제21조 (사무국)

감사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으며, 사무국은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소집통지, 부의안건의 정리 및 배포, 의사록 작성 및 부의안건의 사후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22조 (규정의 개폐)

이 규정의 개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한다.

부 칙(2009.04.0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04.2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01.2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07.0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6.04.3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6년 7월 23일부터 시행한다.